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정 2001. 6. 1 개정 2004. 3. 18
개정 2001. 9. 1 개정 2005. 9. 1
개정 2003. 5. 1 개정 2007. 3. 1
개정 2012. 5. 1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 세칙은 계약규정 제2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그리고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구매방법 결정

제 1 절 일반경쟁계약

제 2조 (경쟁입찰 참가자의 자격)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당해 입찰의 목적물에 필요한 시설 또는 점포를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을 것
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것
3. 보안측정 등 보안요건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그 조사를 마친 자일 것
4.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일 것
5. 외자경쟁계약에 참가하거나 계약을 체결코자하는 자는 대외무역법의 규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국외공급사, 제작사 또는 국내외 컨소시엄이 경쟁계약에 참가하거나 계약을 체결코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3조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의 적용배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계약 참가자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서류 확인 등을 하지 아니한다.

1. 국가, 관공서,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공익법인, (주)포스코가 출자한 법인 및 학교법인 포항공과대학교, 학교법인 포스코교육재단이 출자한 법인 등과 계약을 할 때
2.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할 때

제 2 절 제한경쟁계약

제 4조 (제한경쟁계약의 제한기준)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2.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의 제조
3.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의 구입
4. 공사현장,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시, 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본 대학과 거래 실적이 있는 공급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제 3 절 지명경쟁계약

제 5조(지명경쟁계약의 집행기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계약에 부칠 수 있다.

1.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 등에 의하여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 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2. 본 대학 공사 시공실적회사 또는 시공중인 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3. 본 대학에 등록된 공급사와 우선적으로 계약체결하고자 할 때
4.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지역을 주된 영업소재지로 하는 업체와 공사계약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산업표전화법 제 15조 및 제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가 허가된 광공업규격표시 물품 및 서비스 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인정을 받거나 등급이 사정된 물품을 제조하거나 매입할 때 (개정 : 2012.5.1)
6. 계약의 목적 성질상 지명을 통하여 계약하는 것이 본 대학에 유리할 때

제 6조 (지명경쟁계약의 지명기준) 지명경쟁계약에 참가할 자를 지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그 지명이 공평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사
 - 가. 풍부한 신용과 실적 및 경영상태가 양호한 회사를 지명하되 특수한 장비와 기술의 보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보유한 자를 지명할 것
 - 나. 제5조 제2호에 의한 지명경쟁 시는 본 대학 공사시공 실적회사 또는 시공 중인 회사를 지명할 것
2. 물품의 제조, 기타
 - 가.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수한 기술·기계기구·생산 및 검사설비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행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기술·기계기구·생산 및 검사설비 등을 보유한 자를 지명할 것
 - 나.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의하여 관계부서의 허가 또는 인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자를 지명할 것

제 4 절 수의계약

제 7조 (수의계약 집행기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정인의 용역·설비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정하는 경우

가. 공사

- 1)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2) 직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 현장에 2인 이상의 업자를 투입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3) 특수지역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4)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등 사실상 경쟁을 불허하는 경우
- 5) 마감공사에 있어서 전차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6) 당해 물품을 제조, 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 또는 조립하는 경우
- 7)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지역을 주된 영업 소재지로 하는 업체와 공사계약 하는 경우

나. 물품의 제조 및 구입

- 1) 특허품, 실용신안등록품 또는 의장등록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매입하는 경우
- 2) 당해 물품의 생산자가 단일인이거나 그 물품의 소지자가 단일인인 경우
- 3) 대리점 위임계약상 경쟁견적서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
- 4) 국산대체가 불가능한 물품으로서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이나 기계의 부품을 구입하는 경우

다. 용역, 기타

- 1) 학술연구·설계·감리·조사·측량·시운전·검정·훈련·시설관리 등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용역의 경우
- 2)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임대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돌발사고 복구, 긴급한 행사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지가 없을 때
3. 예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 용역 또는 제조를 하게 할 경우
4. 물품의 구매, 기타 계약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외자의 경우 US\$30,000)
5.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과 계약을 할 때
6. 해당 교육·연구설비에 대한 전문지식 및 특화된 기술능력을 보유하고 해당 교육·연구설비 전문 엔지니어링 제공에 의한 전략적 관계구축이 필요한 회사와 계약할 때
7.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법인 또는 공익법인(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그 법인으로부터 매입 또는 임차하거나 이로 하여금 제조하게 할 때와 이에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할 때
8. 물품의 하역, 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 함에 있어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 할 때
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고 정부기관 및 관련법

에 의한 품질인증 등을 받은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개정 : 2012.5.1)

10.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자활집단촌 복지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로부터 매입 또는 임차하거나 이로 하여금 제조하게 할 때와 이에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할 때
11. 국산화 촉진을 위하여 개발품을 제조하게 할 때
12. 품질보증을 위하여 특정전문회사의 물품을 매입하는 것이 학교에 현저하게 유리할 때
13. (삭제 : 2012.5.1)
14. 제1호 내지 제12호 이외에 계약의 목적,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할 때

제 8조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당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조건(기간은 제외)의 변경 없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긴급한 사정으로 불가피할 때에는 최저입찰 또는 최저견적가격 범위 내에서 예정가격을 조정하여 최저입찰자 및 견적제출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정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예정가격 작성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생략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제 9조 (낙찰자의 계약 불체결 등과 수의계약)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체결 후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낙찰 금액의 범위 내에서 최초입찰에 부칠 때 정한 조건(기간은 제외)의 변경 없이 다른 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긴급한 사정으로 불가피할 때에는 제8조 단서조항을 준용할 수 있다.

제 3 장 구매절차

제 1 절 협상에 의한 절차

제 10조 (소요시기 검토) ① 계약 담당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매건의 소요시기 내에 조달할 수 있도록 신속히 구매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공급시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소요시기내의 조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용부서에 통보하고 사용부서와 협의하여 소요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 11조 (공고) 제17조의 입찰공고를 준용한다.

제 12조 (견적요청 및 접수) ① 계약 담당자는 동일 조건으로 2개 이상의 견적을 입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단일 견적에 의할 수 있다.

② 계약 담당자는 견적요청 시 가격뿐만 아니라 품질, 납기, 부가서비스 등과 같은 비가격 요소를 포함하여 견적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 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견적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전자통신, 전보 및 모사전

송(FAX) 등에 의하여 접수할 수 있다.

- ④ 견적은 지정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지연될 경우에는 사정에 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 13조 (가격 및 비가격 요소 검토) ① 계약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조사하여 가격검토를 하여야 한다.

1. 적절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법령에 의하여 가격이 통제된 경우에는 그 통제가격
2. 신규개발품·특수규격품 등 특수물품, 공사·용역, 협력작업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절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3. 제1호 및 제2호에 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감정가격(법령에 의하여 감정평가 업무를 행하는 기관이 감정 평가한 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4.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관련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5. 본 대학의 종전 실거래 가격

②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가격 검토함에 있어서는 계약수량의 다과, 이행의 난이, 이행기간의 장단,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의 제반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계약 담당자는 동일 조건으로 평가할 수 있는 비가격 요소의 공급사 견적내용에 대하여 학교에 유리한 요소를 선별하여 계약 협상 시 반영할 수 있다.

제 14조 (후보 공급자의 선정) ① 계약 담당자는 과당경쟁의 방지와 부실공급사의 참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견적을 제출한 공급자 중에서 계약협상을 위한 후보 공급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 공급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제출된 견적(가격과 비가격 요소)과 대외 신인도 등을 고려한 평가 기준을 정하여 선정한다.

제 15조 (계약협상) ① 계약 담당자는 가격과 필요한 경우 비가격 부문의 학교의 협상기준을 설정하고 계약협상에 임하여야 한다.

② 1차 계약협상 결과 학교의 협상기준을 수용하는 공급사가 없을 때에는 학교의 협상기준을 조정하여 재협상할 수 있다.

③ 품질수준 및 관련 공급조건이 유사하여 가격요소만으로 계약협상을 실시할 때에는 최저견적을 제출한 공급사들을 대상으로 계약협상을 실시한다.

④ 계약 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구매물품의 기술검토를 위하여 사용부서, 기술부서를 계약협상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 16조 (계약자 선정) ① 계약협상 결과 대학에 가장 유리한 협상안을 수용한 공급자를 계약자로 선정한다.

② 구매물품의 특성상 단일 공급사에 의한 계약이행이 부적합하거나 2개 이상의 공급사를 선정하는 것이 대학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복수 공급사를 계약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③ 대학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수용한 공급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재협상하

여 대학에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 2 절 입찰에 의한 절차

제 17조 (입찰공고) ①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의 공고일정(현장 또는 사양 설명포함)은 사전에 입찰 참가 대상자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간신문에의 게재, 전자통신매체, 기타의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재공고 입찰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입찰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입찰에 부치는 품목, 규격 및 수량
2.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3. 입찰 신청마감 및 입찰의 일시 및 장소
4. 설명의 장소와 일시(설명이 필요한 입찰의 경우에 한한다)
5. 입찰보증금 납부일시 및 장소와 입찰보증금 귀속에 관한 사항
6. 입찰방법
7. 입찰참가 신청서류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제 17조의 1(입찰절차) 입찰 절차에는 봉인입찰(전자입찰 포함)절차와 역경매 절차 방식이 있으며, 입찰 절차 선정방식은 아래 각호를 기준으로 정한다.

1. 예정가격 및 입찰진행 현황 등을 공개하지 아니하고 미리정한 입찰규칙과 화면에 표시되는 안내에 따르는 전자입찰방식을 기본입찰방식으로 정하여 입찰 진행한다.
2. 입찰개시가 및 입찰진행현황 등을 공개한 상태에서 입찰참가자의 투찰가를 낮추어가는 방식의 역경매 절차의 경우 역경매 절차가 학교에 유리하며 입찰개시가가 2천만원 이하 표준품인 경우에 한하여 입찰 방식으로 정하여 진행할 수 있다.

(신설 : 2012.5.1)

제 18조 (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자격증명서류
2. 기타 공고로서 요구한 서류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 담당자는 입찰참가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접수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 조사할 수 있다.

③ 본 대학의 실적업체는 입찰보증금 및 구비서류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입찰참가 신청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입찰참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입찰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 2012.5.1)

제 19조 (입찰유의서 등의 승낙) 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 참가자에 게 따로 정하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약관, 당해계약의 특별약관, 설계서 등을 숙지시키고 이를 승낙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시켜야 한다.

제 20조 (예정가격의 작성) ① 계약 담당자는 입찰에 부칠 사항을 당해 사항에 관한 규격

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그 예정가격을 봉서로 하여 이를 미리 개찰장소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계약, 협력작업 및 연간단가계약 등 필요시에는 생략하거나 가격검토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외자의 예정가격은 비치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고, 명백히 입찰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작성토록 한다. (개정 : 2012.5.1)

제 21조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총액에 대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야 하는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일 경우에 있어서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 22조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 예정가격 결정은 제13조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3조 제1항 1호의 거래실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거래실례가격은 계약담당자가 2인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당해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다만, 2인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당해물품의 거래실례를 조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일 사업자의 거래실례가격
2. 감정가격은 법령에 의하여 감정평가를 행하는 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3. 유사한 거래실례가격은 기능 및 용도에 있어서 유사한 물건의 거래실례가격
4. 견적가격은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견적가격

③ 제13조 제1항 2호의 원가계산에 의한 기준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준가격조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재료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 또는 시공에 소요되는 소정규격의 재료의 양 및 그 단위당 가격명세
2. 노무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 또는 시공에 소요되는 공종별 노무량 및 그 노임명세
3. 경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 또는 시공에 소요되는 비목별 수량 및 단위별 가격명세
4. 일반관리비 :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5. 이윤 : 노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을 곱한 금액

④ (삭제 : 2012.5.1)

제 23조 (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된다.

제 24조 (입찰방법)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대학에서 정하는 소정의 입찰서 또는 견적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자입찰을 실시할 경우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은 학교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입찰 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대리인도 당해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학교가 전자기술로써 제공하는 전자투찰기능을 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 2012.5.1)

③ 입찰서 또는 견적서를 접수한 때에는 확인인을 날인하고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또는 입찰을 위한 견적서)는 1인 1통이어야 한다.

⑤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입찰 장소에서 횟수의 제한 없이 재입찰을 할 수 있다.

⑥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양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할 수 있으며 계약부서는 사양에 대한 기술검토를 발주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⑦ 계약부서는 제6항에 의한 기술검토서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 25조 (공사 등의 입찰방법) ① 공사를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 또는 개찰 전에 미리 설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공사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는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금액의 산출 및 공사시공에 필요한 설계서(설계도면·공사시방서·시공물량산출서 및 현장설명서 등)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공사계약 체결 시 계약자가 작성하는 공사비 산출내역서는 본 대학이 전산계약내역서를 발행할 경우 입찰 시 입찰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를 제출받지 아니한다.

④ 설계변경 및 정산 업무 등은 전항의 계약내역서를 기준으로 처리한다.

제 26조 (개찰) ① 개찰은 공지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출석한 자리에서 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전자시스템을 통하여 미리 정한 소정의 절차에 의거 전자적으로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 2012.5.1)

② 입찰자는 일단 제출한 입찰서의 교환, 변경 또는 취소를 하지 못한다.

③ 외자설비구매에 있어서 계약담당자는 입찰서의 내용을 입찰자가 출석한 자리에서 개봉, 선언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7조 (낙찰자의 결정방법) 삭제(2004. 3. 18)

제 28조 (낙찰자의 결정) ① 입찰서를 지정된 시간까지 접수한 때에는 입찰서의 접수마감을 선언하고 입찰자의 면전에서 개봉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전자시스템을 통하여 미리 정한 소정의 절차에 의거 전자적으로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 2012.5.1)

②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전자시스템을 통하여 미리 정한 소정의 절차에 의거 전자적으로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적격자의 판단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 때에는 낙찰여부를 유보할 수 있다. (개정 : 2012.5.1)

③ 낙찰이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추첨으로 낙찰자를 정하여야 한다.

④ 수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계약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⑤ 지출의 원인이 되는 경쟁계약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⑥ (삭제 : 2012.5.1)

제 29조 (재공고) ① 해당 구매계약건에 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으며 재공고시에는 예정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1회 입찰 수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찰 즉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개정 : 2012.5.1)
제 30조 (입찰무효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 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3. 기타 대학에서 유효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입찰
- ②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개찰에 참가한 입찰자의 면전에서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전자시스템을 통하여 미리 정한 소정의 절차에 의거 전자적으로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 2012.5.1)

제 4 장 계약 및 사후관리

제 31조 (계약서의 작성)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 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정된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기명날인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명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또한, 전자계약체결의 경우에는 전자계약서에 쌍방이 전자서명 한 때에 계약이 확정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서 등 계약의 근로로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서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전자적인 형태로 보관할 수 있다.

1. 계약금이 1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개정 : 2007.3.1)
2. 경매에 부치는 경우(개정 : 2007.3.1)
3.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개정 : 2007.3.1)
4.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 2007.3.1)

④ 외자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주문서(Purchase Order)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설비 또는 그에 준하는 특별한 경우라고 부서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쌍방의 상호계약서를 작성·교환한다.

⑤ 구매 업체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자메일이나 FAX로 계약서류를 송신한 경우 계약체결로 인정한다.

제 32조 (연대 보증인)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해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연대보증인은 당해공사를 이행할 수 있는 자격과 재력이 있어야 하며 보증일 현재 입찰참가 가격을 제한받고 있지 아니하거나 그 제한을 받고 당해 제한기

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 이어야 한다.

- ③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연대보증인에게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의한 청구를 한 때에는 계약금액 중 연대보증인의 이행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대보증인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할 때에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⑤ 계약담당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이상 납부하게 함으로써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예정가격의 100분의 85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⑥ 계약담당자는 연대보증인으로 된 자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연대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제 33조 (계약보증금)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이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한 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공사계약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발행 자기앞 수표 포함),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은행·공제조합 등의 보증서 등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예정가격의 100분의 85미만으로 낙찰된 경우에는 100분의 2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③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에 수회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분기별 이행예정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④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⑤ 계약의 체결일을 연기하거나 계약의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기간에 그 연장하고자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는 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한다.
- ⑥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타 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보증금을 학교에 귀속시켜야 한다.
- ⑦ 제1항의 보증금은 보증의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 34조 (보증금의 납부면제) ① 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공익법인
2. 본 대학과 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고, 부정당업자로서 대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또는 그 자격제한을 받고 당해 기간 경과 후 3년 이상이 되는 자
3. 계약금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4. 포스코 또는 포스코가 출자한 법인과 학교법인 포항공과대학교 및 학교법인 포스코 교육재단이 출자한 법인(개정: 2007.3.1)
5.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대학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그 지급을 약속하는 보증금지급 이행각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 35조 (하자보수보증금) ① 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하자보수보증금은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납부하게 하고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보관하여야 한다.

③ 설치 완료 후 성능 보증이 필요한 설비구매계약에 있어서는 성능 및 하자 책임을 일괄보증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최종납품 후 그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자보수 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만료일은 최종납품일로부터 24개월 또는 최종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 중 선도래일로 하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최종검수가 최종납품일로부터 12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에는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추가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⑤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방법, 귀속, 보증기간의 연장 및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면제에 관하여는 계약보증금의 방법을 준용한다.

제 36조 (보증금) 보증금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1. 입찰보증금율은 내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외자는 100분의 2이상으로 한다. 다만,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의 총 입찰예정량을 곱한 금액을 기준 한다.
2. 계약보증금율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10이상(공사계약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이 없을 경우에는 100분의 20이상)으로 하고, 예정가격 생략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공사계약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이 없을 경우에는 100분의 20이상)으로 한다. 단,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 또는 분기예정량을 기준하여야 한다.
3.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4. 하자보수보증금율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까지로 하며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따른다.
 - 가. 주요구조물 공사 : 100분의 5이상
 - 나. 도로매립(포장공사를 포함), 상·하수도, 하천, 전신전화, 일반건축 등 공사 : 100분의 3이상

다. 부지정지 등 공사와 기타 경미한 공사 : 100분의 2이상

제 37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① 하자가 발생하여 이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하자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하자보수보증금은 본 대학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제 38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약금액의 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체결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상의 단가(이하"예정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고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에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되, 학교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증가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학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낙찰률(당초의 기준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수의계약에 의한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학교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학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이외에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 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④ 제39조에 규정하는 물가변동 이외의 계약조건의 변경으로 공사물량의 증감 없이 계약단가를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⑤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체결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또는 이윤율에 의하여 계상한다.

제 39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이행을 위하여 90일 이상이 경과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후 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단, 공사의 경우에는 본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등의 등락으로 인하여 등락폭의 합계액이 계약금액에 비하여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가장 적합한 기준을 선택하고 그 사유를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물가변동 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대가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다만, 대학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 40조 (경매) ① 동산의 매각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경매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 시에는 예정가격을 제시하여 입찰하게 하고 최초 입찰액을 구술로 발표한 후 다른 응찰자가 없을 때까지 다시 입찰하게 하여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있어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때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 41조 (지체상금) ①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배상률에 지체일수를 곱하여 정하되, 지체상금의 상한액은 지체상금 계산 대상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외자설비 및 기자재의 배상률 및 상한액은 외자구매일반약관에 따로 정한다.

1. 물품의 제조 및 구매 1000분의 1.5이상
2. 시설공사 1000분의 1이상
3. 물품의 수리 및 용역, 가공 1000분의 2.5이상
4. 운송 및 보관 1000분의 5 이상
5. 대여 및 기타 1000분의 2.5 이상

② 제1항의 경우에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을 본 대학이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다만,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제조 또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에 대한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보증금 상당액(면제된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에 달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 42조 (부정당, 불성실업체의 거래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실이 있는 후 지체 없이 아래 각 호와 같이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2007.3.1)

1. 계약이행에 있어서 고의로 공사 또는 제조를 조잡하게 하거나 물품의 품질, 수량에 관하여 부정행위가 있는 자 : 3년
2. 물품의 품질, 수량에 관하여 부정행위가 있는 자 : 3년
3. 경쟁참가를 방해하거나 경락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행위를 방해한 자 : 1년
4.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 : 1년
5.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3년
6. 일반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서류, 기타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

3년

7. 공사계약에 있어 총장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시키거나 총장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 : 1년
8. 60일 이상 지체된 중 납품의지가 없는 자 : 1년
9. 정당한 이유 없이 대학이 요청한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3년
10. 보증금 입찰 미이행자 : 1년
11.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계속 2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 1년
12. 기타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에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한 자 : 1~3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 기타의 단체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 2007.3.1)

제 43조 (감독 및 검사) ① 공사, 제조 기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의 지정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이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 계약대상자가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이를 검사하여야 한다. 계약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 또는 완납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설공사에 있어서 준공신고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마쳐야 한다.

④ 특히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 또는 검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 또는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 또는 검사를 하는 자는 감독조서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44조 (대가) ① 공사, 제조, 매입, 기타 지출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후가 아니면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없으며 검사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에 의거하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재산의 매각, 대부, 용역의 제공, 기타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대가를 계약과 동시에 본 대학에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관공서 또는 정부투자기관이거나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지급보증인으로 하여 그 대가에 실비 보상액을 가산한 정액 이상의 지급보증서를 제출한 때에는 대가의 선납을 면제할 수 있다.

제 45조 (보증금의 납부) 계약담당자는 구매단위별로 입찰, 계약, 차액, 하자보수보증금 등 해당 보증금을 현금(채신관서 또는 은행발행 자기앞 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또는 증권으로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고, 제34조의 경우에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은행의 지급보증서

2. 본 대학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3.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보증기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또는 공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사업단체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제 46조 (보증보험증권 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절차) 은행의 지급보증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건설공제조합보증서(이하"보증보험증권 등"이라 한다) 등을 보증금으로 제출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게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보증금액은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 이상일 것
2. 입찰보증금에 같음하여 제출하는 보증보험증권 등은 보증기간의 개시일이 입찰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입찰일로부터 30일 이상일 것
3. 계약보증금 및 차액보증금에 같음하여 제출하는 보증보험증권 등의 보증기간의 개시일은 본 대학의 보증계약자와 체결하는 계약기간이 개시되기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일 것
4. 하자보수보증금에 같음하여 제출하는 보증보험증권 등의 보증기간은 준공검사를 한 날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기간 종료 후 60일 이상일 것

제 47조 (보증금의 납부 및 반환시기) ① 보증금의 납부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 신청마감일까지
2. 계약보증금 : 계약체결까지
3. 하자보수보증금 : 대가의 최종지급 시까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은 보증의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 5 장 소액구매특례

제 48조 (집행기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액구매계약에 부칠 수가 있다. 단, 이 소액구매는 구매발주부서(연구비의 경우 구매요구자)의 책임과 권한하에 시행한다.

1. 신속구매(인터넷 구매, 전자상거래 구매 등)을 요할 때
2. 현지 구매를 해야 할 때
3. 구매요구자가 소액구매계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공사계약은 제외함)

제 49조 (소액구매금액의 한도) ① 제48조의 소액구매계약의 허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발주부서에서 필요하다면 금액에 관계없이 계약의뢰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9.1)

1. 구매한도

가. 내자 : 300만원 이하 (개정: 2005.9.1)

나. 외자 : US\$3,000 이하 (개정: 2005.9.1)

2. 정산방법

가. 내자 : 세금계산서(또는 Credit Card 영수증)등을 첨부하여 구매정산서 및 전표 작성하여 관련부서에 제출하여 추산 및 정산을 한다.

나. 외자

1) 물품대금 및 부대비용 : 외화송금 등 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전표작성하여 관련 부서에 제출하여 추산 및 정산을 한다.

2) 해당물품이 관세감면대상인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통관의뢰하여야 하며, 수입 신고서 원본을 관련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제1호 나목(연구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 구매를 요하는 경우이거나 필요한 사유(연구의 효율성과 경제성 효과 제고 등)가 명백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 하에 한도 금액에 관계없이 예외적으로 소액구매로 정산을 할 수 있다.

제 50조 (소액구매시 유의사항) ① 소액구매를 행할 때에는 본 대학 구매 문화 및 질서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련자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부적절한 거래를 행한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본 대학은 해당업체를 거래중지 시킬 수 있다.

제 6 장 외자구매특례

제 51조 (견적요청 및 접수) ① 기자재구매에 있어서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제작사, 공급사 또는 국내무역대리점에 견적제출을 요청한다.

② 설비구매에 있어서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발주부서의 의견을 고려하여 설비제작사 또는 설비공급사에게 견적제출을 요청한다.

③ 외자입찰 시 1개 입찰사가 2개 이상의 제작사의 견적을 제출할 수 있다.

제 52조 (견적서의 조건변경) ① 계약협상에 있어서 학교에 유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견적제출자로 하여금 견적서의 내용 중 공고조건과 부합되지 아니한 사항을 철회 또는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협상에 있어서 접수된 견적서의 내용이 공고조건보다 유리할 경우에는 그 견적서를 채택하여 당해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경쟁입찰에 있어서 대학에 유리하고 입찰금액의 순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서류를 추가로 접수, 수리할 수 있다.

1. 입찰서 및 입찰보증금 유효기간 연장

2. 납기의 단축

3. 기타 대학에서 확인을 요하는 사항

제 53조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의 납부) ① 외자계약담당자는 기자재 또는 설비구매 계약 시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학교가 인정하는 지급수단으로 납부케 하여야 한다.

② 설치완료 후 성능 보증이 필요한 기자재 또는 설비구매계약에 있어서는 성능 및 하자책임을 일괄보증하는 하자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자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 54조 (지체상금) ① 계약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선적기한내에 선적하지 못한 때에는 외자구매계약 일반약관 또는 별도 계약조건에 따라 지체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납품지역의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 55조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 및 지체상금면제) 외자구매에 있어서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 및 지체상금을 면제 또는 보증금지급 이행각서로 대체할 수 있다.

1. 신용이 우수한 제작사 또는 설비공급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2. 계약금액이 U\$30,000미만인 계약을 체결할 때
3. 계약사가 계약전제조건으로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 및 지체상금의 면제를 요구하는 때

제 56조 (검사) ① 사용부서는 통관 후 본 대학에 입고된 물품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외자물품검수자는 해당물품 구매요구자 또는 사용자가 된다.

제 57조 (국제상관례의 준수) 외자계약담당자는 국제상관례 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조건을 수락치 않고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국제상관례 또는 계약상대자의 요구조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 7 장 보 칙

제 58조 (일반약관) 시설공사계약, 용역도급계약, 물품구매계약의 일반약관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1년 6월 1일부로 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1년 9월 1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3년 5월 1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4년 3월 18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5년 9월 1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7년 3월 1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2년 5월 1일부로 개정, 시행한다.